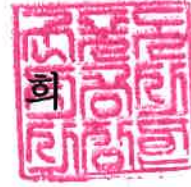


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2021년 3월 10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67호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개정이유

- 2020년 군포도시공사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직군 통폐합 사항 반영

□ 주요골자

- 기능직 명칭 삭제(안 제4조, 제8조, 제10조, 제26조제1항2호, 제35조제1항2호)
- 직종별 직급 및 직위에서 기능직 삭제(안 제15조 별표 1)
-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기능직 삭제, 법령에 의한 선임 등을 위한 채용 시 자격증 상향 채용 존치(안 제9조 별표 2)
- 직군 통폐합 관련 인사규정 외 관련 규정 및 내규 개정
 - ※ 직군 통폐합: 일반직(5, 6, 7), 기능직(1, 2, 3) → 일반직(5, 6, 7)

- ☐ 개정규정안: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 사전예고결과: 해당없음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기능직”과 제2항의 “기능직 1급 내지 3급으로 하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 “(기능직의 경우 자격증 소지 필수)”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2호의 “및 기능직”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2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2호의 “및 기능직”을 삭제한다.

제15조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직 종	직 급	직 위
일반직	2 급	본부장, 부장, 팀장
	3 급	본부장, 부장, 팀장, 담당
	4 급	
	5 급	부장, 팀장, 담당
	6 급	담당
	7 급	
업무직	-	담당

제9조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직급별	자 격 기 준
2급	1.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임원 직하위 부서장으로 4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6급 상당 직급으로 3년 6개월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7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8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자격제한 없음 (단,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자격증 및 일반직 6급 자격기준 미만의 직무경력 제시 가능)

- ※ 지역제한: 경기도로 제한(단,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지자체장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
-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채용을 위해 해당 자격을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 ※ 법령에 의한 선임, 기술분야 채용 등에 있어서는 채용 분야 자격증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 통폐합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 직군 통폐합에 따라 기능직 1급은 일반직 5급, 기능직 2급은 일반직 6급, 기능직 3급은 일반직 7급으로 통합한다.

제3조(다른 규정 및 내규의 개정)

①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 “기능직 등”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별표1]의 “기능직”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4항의 “ 및 기능직”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별표3]의 “기능직”을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별지 제14호 서식] “경영지원부/사업운영부서 일반2급 이상”과 “사업운영부서 일반3급 이하 및 기능직”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별표5]의 “기능1급”을 삭제하고 “기능2, 3급” 항목을 삭제한다.

제35조제3항의 “일반직과 기능직을 구분하여”를 삭제한다.

②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별표 1] 기능직 항목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별표5] “기능직 1급, 2급, 3급 항목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별표6] “기능직 1급”을 “일반직 5급”으로 하고 “기능직 2급 이하”를 일반직 6급 이하”로 한다.

③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의 “1)일반직: 자격+법정선임”을 “1)일반직: 자격+직급+법정선임”으로 하고 “2)기능직: 직급+자격+법정선임”을 삭제한다.

④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별표1]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의 “기능1급”, “기능2~3급”을 삭제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의 “5급, 기능1급”을 “5급 이하”로 한다.

⑤군포도시공사 퇴직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급이하 일반직 직원 및 기능직”을 삭제한다.

제12조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능직”을 삭제한다.

⑥군포도시공사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기능직”을 삭제한다.

⑦군포도시공사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별지 제3호의2 서식] “기능직”을 삭제한다.

⑧군포도시공사 유연근무제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및 기능직”을 삭제한다.

⑨군포도시공사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별지 제4호 서식] “기능직 사원”을 삭제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지 원 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 영 지 원 부 장 이 현 동
	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성 용 현
	담당자 성명 (전 화)	이 태 권 (390-7615)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종 등) ①직원의 직종은 <u>일반직, 기능직, 업무직, 계약직</u> 으로 구분한다. ②직원의 직급은 <u>일반직 2급 내지 7급, 기능직 1급 내지 3급으로 하며</u> 업무직은 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 계약직은 계약직직원규정에 따른다.	제4조(직종 등) ①----- <u>일반직, 업무직, 계약직</u> ----- ②----- <u>일반직 2급 내지 7급,</u> ----- ----- -----.
제8조(채용방법) ① <생략> 1. <생략> 2. <u>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경력 소지자(기능직의 경우 자격증 소지 필수)</u> 3.~7. <생략> ② <생략>	제8조(채용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경력 소지자</u> 3.~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채용제한연령) ① <생략> 1. <생략> 2. <u>3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u> : 공사 정년 범위내 채용	제10조(채용제한연령)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3급 이하 일반직</u> : 공사 정년 범위내 채용
제26조(승진소요기간 등) ① <생략> 1. 일반직 가.~마. <생략> 2. <u>기능직</u> 가. <u>2급에서 1급 : 2년 이상</u> 나. <u>3급에서 2급 : 1년 6개월 이상</u> ②~③ <생략>	제26조(승진소요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1. 일반직 가.~마. <현행과 같음> 2. <u><삭제></u> 가. <u><삭제></u> 나. <u><삭제></u>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정년) ① <생략> 1. <생략> 2. <u>일반직 3급이하 및 기능직 직원</u> : 만 60세 3. <생략>	제35조(정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일반직 3급이하 직원</u> : 만 60세 3.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1]

직종별 직급 및 직위(제15조 관련)

직 종	직 급	직 위
일반직	2 급	본부장, 부장, 팀장
	3 급	본부장, 부장, 팀장, 담당
	4 급	
	5 급	부장, 팀장, 담당
	6 급	담당
	7 급	
<u>기능직</u>	<u>1 급</u>	<u>부장, 팀장, 담당</u>
	<u>2 급</u>	<u>담당</u>
	<u>3 급</u>	
업무직	-	담당

개정안

[별표1]

직종별 직급 및 직위(제15조 관련)

직 종	직 급	직 위
<u>일반직</u>	<u>2 급</u>	<u>본부장, 부장, 팀장</u>
	<u>3 급</u>	<u>본부장, 부장, 팀장, 담당</u>
	<u>4 급</u>	
	<u>5 급</u>	<u>부장, 팀장, 담당</u>
	<u>6 급</u>	<u>담당</u>
	<u>7 급</u>	
업무직	-	담당

현 행

[별표 2]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1. 일반직

직급별	자 격 기 준
2급	1.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임원 직하위 부서장으로 4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6급 상당 직급으로 3년 6개월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7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8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자격제한 없음 (단,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자격증 및 일반직 6급 자격기준 미만의 직무경력 제시 가능)

※ 지역제한: 경기도로 제한(단,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지자체장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채용을 위해 해당자격을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2. 기능직

직급별	자 격 기 준
1급	1.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2.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8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 3.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 채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1.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 3.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 채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자격제한 없음 (단,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자격증 및 기능직 2급 자격기준 미만의 직무경력 제시 가능)

※ 지역제한: 경기도로 제한(단,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지자체장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

※ 법령에 의한 선임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안

[별표 2]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직급별	자 격 기 준
2급	1.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임원 직하위 부서장으로 4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6급 상당 직급으로 3년 6개월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7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8급 상당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공무원 9급 상당 직급으로 1년 6개월 이상 경력자 3.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자격제한 없음 (단, 채용직무 특성에 따라 자격증 및 일반직 6급 자격기준 미만의 직무경력 제시 가능)

※ 지역제한: 경기도로 제한(단,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지자체장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채용을 위해 해당 자격을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한 선임, 기술분야 채용 등에 있어서는 채용 분야 자격증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